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5.(목) 배포 2026. 11. 5.(목) 08:50

고위험군 소아·영유아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작 안내

- 고위험군 소아·영유아 11월 11일부터 소아·영유아용 모더나 백신 접종 시작
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아·영유아(6개월~11세)용 모더나 백신 긴급 도입(10.28)에 따라, **11월 11일**(수)**부터 고위험군 소아·영유아**(6개월~11세) **대상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작**한다.

소아영유아용 모더나 XFG 백신은 12세 미만 대상의 국내 허가·승인된 백신이 없는 점을 고려해 **고위험군* 소아·영유아 보호**를 위해 **긴급 도입**된 백신으로, 12세 미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.

*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(요양병원, 요양시설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·노숙인 생활시설) 입원·입소자

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소아·영유아(6개월~11세)의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은 **11월 11일**(수)**부터 이듬해 4월 30일**(금)까지 **접종 가능**하며, 접종 의료기관은 **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***에서 **확인**할 수 있다.

*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nip.kdca.go.kr) > 예방접종관리 > 위탁의료기관 찾기

접종 대상		접종 기간
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·입소자	**· 6개월~11세** (접종 당시 생년월일 기준)	2026년 **11월 11일(수)** ~ 2027년 **4월 30일**

아직 **기초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고위험군 소아영유아**는 **기초접종**(1~2회) **완료**가 필요하며, **기초접종을 완료한 고위험군 소아·영유아**는 **매년 1회**(면역저하자의 경우 2회) **접종**한다.

이에, 고위험군 소아·영유아는 **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에 따라 최대 2회까지 접종이 필요**하므로 **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접종**하여야 한다.

<고위험군 소아·영유아용 모더나 백신 예방접종 횟수 및 접종 간격>

과거 접종 여부		과거 접종 백신	최소접종 간격	접종 횟수
기초접종 미완료자	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	-	4~8주	2회 접종으로 기초접종 완료 이후 매년 1회(면역저하자 2회) 접종
	과거 1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	화이자	3주, 8주	
		모더나	4~8주	1회 접종으로 기초접종 완료 이후 매년 1회(면역저하자 2회) 접종
	과거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	화이자	8주	
기초접종 완료자*		모더나, 화이자	3개월	매년 1회(면역저하자 2회) 접종

* 모더나 백신 2회 접종 또는 소아용 화이자 2회 또는 영유아용 화이자 3회 접종자

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면역저하자 등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해 **증빙 서류를 지참***해야 한다. 또한, **접종 후**에는 **20~30분간** 접종한 기관에 머물러 **이상반응을 관찰한 후** 귀가하여 **충분한 휴식**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.

* 면역저하자 등 증빙 서류: 진단서, 소견서, 시설 입소 확인서 등
다만,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 증빙 서류 없이 접종 가능

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"코로나19로부터 면역저하자 등 **고위험군 소아·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이 11월 11일부터 시작**된다."며,

"중증화 위험이 높은 소아·영유아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**보호자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**해 주시길 바란다"라고 당부하였다.

또한, "11월 4일 18시 기준, **'26-'27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**은 **약 391만명이 참여**하여 65세 이상 인구 중 **34.2%가 접종**하였다."고 밝히며,

"**65세 이상, 면역저하자 등** 코로나19 **고위험군**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**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**드린다."고 전했다.

<붙임>　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아·영유아 고위험군(면역저하자 등) 범위

담당 부서 <총괄>	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	책임자	과　장	이혜림 (043-719-8360)
		담당자	연구관	구현숙 (043-719-8365)
담당 부서 <협조>	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	책임자	과　장	이승묵 (043-719-6810)
		담당자	사무관	김남혁 (043-719-681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아·영유아 고위험군(면역저하자 등) 범위**

면역저하자

■ **생후 6개월 이상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**

연령	기준
생후 6개월 ~ 4세	▪ 심각한 면역 저하자 : 고용량 스테로이드(prednisone 기준 20 mg/일 또는 2 mg/kg/일 이상)를 장기간(14일 이상) 사용하는 경우,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,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, 장기이식환자,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▪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,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(CAR-T)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▪ 만성폐질환, 만성심장질환, 만성간질환, 만성신질환, 신경-근육질환 ▪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(삼염색체증 21)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▪ **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**
5세 이상	▪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▪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▪ 조혈모세포 이식 후 3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, 키메라 항원 T 세포(CAR-T)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▪ 일차(선천) 면역결핍증(항체결핍, DiGeorge syndrome, Wiskott-Aldrich syndrome 등) ▪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▪ **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**

감염취약시설 입원·입소자

■ **생후 6개월 이상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감염취약시설 입원 또는 입소자**

감염취약시설	기준
요양병원	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
요양시설	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※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
노숙인 생활시설	『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』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※ 노숙인자활시설, 노숙인재활시설, 노숙인요양시설
장애인 생활시설	『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』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※ 장애유형별거주시설, 중증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영유아거주시설, 장애인단기거주시설, 장애인공동생활가정, 피해장애인쉼터, 피해장애아동쉼터
정신의료기관	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(폐쇄병동) 운영기관 ※ 보호병동(폐쇄병동) 재원환자뿐만 아니라,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함하며,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(상급종합병원)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,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
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	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(거주)하는 시설(생활시설·종합시설),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※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, 공동생활가정, 지역사회전환시설, 중독자재활시설, 종합시설